#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7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최은석·이종배·김종양

박충권 • 권성동 • 고동진

조지연 • 박덕흠 • 이인선

구자근 · 정희용 · 신성범

서일준 • 우재준 • 박상웅

김재섭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개인(이하 "정부기관등"이라 함)에게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,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, 그리고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통계자료 수집·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 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 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통계자료 수집·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 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,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86조, 제87조,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#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와 정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87조제3호 중 "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를 "금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
- 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- 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- 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8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
제88조제1항 전단 중 "금융기관에"를 "제87조 각 호의 자에"로 한다.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5조의3(과태료)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・작성	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・작성
등) (생 략)	등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른 자료와 정보
	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
	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
	<u>따라야 한다.</u>
제87조(자료제출요구권) 한국은행	제87조(자료제출요구권)
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	
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	
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	
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	
수 있다. 이 경우 요구하는 자	,
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	
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	
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	
정하여야 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	3
지 아니하는 자로서 「금융산	
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	
제2조에 따른 <u>금융기관 중 자</u>	<u>금융기관</u>
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	

령으로 정하는 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88조(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)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 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(이하 "금융감독원"이라 한다)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필요시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금융감작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다.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

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	른
<u> 상호저축은행중앙회</u>	
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	른
조합과 그 중앙회	
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	따
른 조합과 그 중앙회	
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	른
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	<u>조</u>
합중앙회	
8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	글
고 및 중앙회	
에88조(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	구
등) ①	
제87조 각 호의 자에-	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5조의3(과태료) ① 제86조제2 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 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